

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19. 4. .

의결 사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제안연월일	2019. 4. .
제안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목 차

1. 조사목적	3
2. 관련법규	3
3. 조사기간	3
4. 조사내용	4
5.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4
6. 조사일정	5
7. 조사방법 및 조사진행순서	5
8. 조사결과 처리	6
9. 소요경비	6
10. 주의사항	6
11. 기타사항	7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1 조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적인 보조금 운영방안을 마련 하고자 함

2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 3. 7.)
 -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 3. 13.)
 -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3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19. 4. ~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4 조사내용

- 조사대상 기관 : 구미시
- 조사대상 기간 : 최근 3년간('16년도~ '18년도)
 - ※ 단, 조사에 필요시 최근 3년을 초과하는 자료도 요구할 수 있음
- 조사대상 사무
 - 구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 전반
 - ※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
- 사무범위
 - 구미시 보조사업 전체 현황
 - 국·도비 보조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 사업비 집행 등
 - 구미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관리실태 및 감독사항
 - 보조사업 정산관리 점검 등

5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 고
위 원 장	김택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미경	"	
위 원	권재욱	산업건설위원회	
	김낙관	기획행정위원회	
	김재우	"	
	신문식	산업건설위원회	
	장세구	"	
사무보조자	박상호	의회운영전문위원	
	서성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종명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주현	행정 8급	
	이미옥	속기사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차후 위촉

6 조사일정

일 정	조사장소	조사내용	비 고
2019. 4.	조사위원회 회의실	• 조사 및 활동계획 수립	
2019. 5.	“	• 1차 조사활동 -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	
2019. 6.	행정사무감사		
2019. 7. ~ 2019. 8.	조사위원회실 및 조사대상현장	• 2차 조사활동 - 서류 확인 및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 증인, 참고인 등 출석 및 증언	
2019. 9. ~ 조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의결 시	조사위원회 회의실	•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조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상정 및 의결	

※ 조사활동 중 조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7 조사방법 및 조사진행순서

가. 조사방법

1. 조사대상기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2. 서류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검토
3. 증인출석요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및 업무 관련자의 의견 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
4. 조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질의형식으로 진행
5.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로 비공개 가능
6. 필요시 현장 확인·검증(관계공무원 동행)

나. 조사진행순서

1. 조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2. 증인선서
3. 피조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4. 일반사항 및 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5.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증언·진술)
6. 조사결과 강평 및 조사종료 선언

8 조사결과 처리

- 조사결과(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
-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등 구미시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구미시장→의회)

9 소요경비

- 조사위원회 활동경비(간담회, 토론회 등), 사무보조자 지원경비, 증인 등의 지급비용 등은 의회의 예산범위와 지급 기준에 따름

10 주의사항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척과 회피) 준수
 - 조사특별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주의의무) 준수
 - 조사특별위원 및 사무보조자 등은 조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징계)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3조(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86조에 따라 징계
- ※ 서약서(안) : “붙임1” (자체서식)

11 기타사항

- 증인 출석요구
 -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되는 구미시 관계공무원과 시설 관계자
 - ※ 추후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함, 출석요구서(안) : “붙임2”
- 선서요령
 -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
 -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대표자 1인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 조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 선서(안) : “붙임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별표)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일반사항(조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및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되도록 함
-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본회의 보고·채택
 -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의결(채택)
 - 의장 제출
 - 본회의에서 보고, 의결(채택)

<붙임1>

서 약 서 (안)

본인은 2019년 월 일부터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기타 관련 제 법령을 준수하고, 정직·성실·청렴·겸허한 자세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에 보답」하는 엄정한 자세로 조사활동에 임한다.
2. 본인은 「자의적 판단」이나 「적당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조사활동에 임한다.
3. 조사대상기관의 정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조사대상기관 공무원 등과는 상호인격적 자세를 견지한다.
4. 조사활동 기간 중 일과 종료 후에는 물론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대상기관 공무원 등과 일체의 개인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다.
5. 조사활동 중 지득한 공·사적인 기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으며, 조사대상 자료 일체에 대하여 전자적·비전자적 형태로의 외부 반출을 하지 않는다.
6. 어떠한 명목의 금품과 향응도 배격하며, 조사활동을 이유로 한 일체의 청탁·압력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19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서명/인)

증인출석요구서 [안]

귀 하

구미시의회의가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 2019. . . ~ .
(기간 중 필요시 출석요구)
2. 출석장소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3. 출석방법 : 조사기간 중 필요에 따라 출석

2019. . .

구 미 시 의 회 의 장

선 서 [안]

본인은 구미시의회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인)